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특 수 임 무 유 공 자 예 우 및
단 체 설 립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가보훈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442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생계지원금의 월 지급금액 등 규정(안 제59조의2)

나.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안 제59조의3)

다. 생계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61조의2)

라.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의 접수 등에 관한 권한을 관할 보건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하고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
(안 제66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생계지원금)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생계지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분할 지급 신청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지원금”으로,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본다.

제59조의3(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75조의2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급 신청서에 소

득·재산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75조의2제4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수급권 확인·심사를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조사·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④ 법 제75조의2제5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훈급여금” 및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제61조의2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제66조제1항에 제4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은행에”를 “은행에 위탁하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로 한다.

40의2. 법 제75조의2, 같은 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지급,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질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신청의 촉진

부 칙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9조의2(생계지원금)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생계지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분할 지급 신청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지원금”으로,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본다.</u>
<u><신 설></u>	<u>제59조의3(생계지원금의 신청 방</u>

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75조의2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급 신청서에 소득·재산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75조의2제4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수급권 확인·심사를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조사·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④ 법 제75조의2제5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8조의2부터 제33조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훈급여금” 및 “생활조정수
당”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제61조의2(학습보조비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보조비 등(이하 “학습보조비등”이라 한다)에 대한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사람(법 제78조에 따라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학습보조비등의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1. ~ 8. (생략)

<신 설>

② · ③ (생략)

제6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제13호부터

제61조의2(학습보조비등의 환수)

①

1. ~ 8. (현행과 같음)

9. 법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
원금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제15호까지, 제17호 및 제20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하고,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20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교육기관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1. ~ 40. (생략)

<신 설>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 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 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한다.

5까지,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지급,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질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신청의 촉진

② -----

----- 은행

에 위탁하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5411